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6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9. 21. ~ 2022. 10. 11.

### 3.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제3조(지원내용)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신설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토지관리과, 전화 : 02-3396-5904, 팩스 : 02-3396-8809, email : bcj9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및 요보호노인 긴급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9.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의뢰할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